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20호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-42호(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15년 3월 2일

우정사업본부장

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폐지

○ 폐지이유

「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」은 현재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8호(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)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고시를 폐지합니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